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3년 10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세무 및 법률정보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디지털세 필라 1 다자조약문 (Multilateral Convention) 현재안 공개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23.9.22. ~ 10.4.)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9.22]

주요내용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3.6.12)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23.9.22.~’23.10.4.)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 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동 개정안에 반영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정감사인인 부당행위 신고접수 및 자율분쟁 조정업무는 기업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기구인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거래소 내)로 일원화

○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공정·타당하게 마련한 자율조정안을 당사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금감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가능

□ 지정회사의 가치평가용역 등 수행의 공정성 강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거래소가 소규모(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

□ ‘재무제표 신속수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라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취지 달성을 위해 심사시 자료제출 협조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운영

1. 거래소(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7인 이내)으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기업, 감사인) 의견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제시하고,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정취소를 건의할 수 있음

앞서 정부는 지정감사 관련 분쟁의 자율조정업무를 거래소에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8.16~9.25)한 바 있음. 동 협의회의 설치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거래소(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위탁 예정인 분쟁조정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하위규정에 마련

소규모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

2. 거래소(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통해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

그간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원 미만)의 경우 지정감사인이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기업이 선정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지정감사인이 구체적 설명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음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

이에 가치평가용역 수행의 공정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평가기관 선정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지정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임

* (선정 프로세스 예시) 피감기업이 용역특성, 비용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전문평가기관 Pool 內 3개사(잠정) 내외 선정 → 지정감사인과 협의 후 3개사 중 최종 1개사 선정

3.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

*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무제표 수정권고 및 수정 후 경조치 종결

**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회계부정제보 접수 등에 따라 실시

❶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지정감사 회사(이하 '지정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착수 근거 등을 명확화

현행 외부감사규정은 표본추출*을 통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시 모집단에서 지정회사를 제외하도록 규정. 하지만, 주기적 지정제 시행('19 년~) 이후 지정회사 수가 크게 증가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높은 회사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음

* (방식) ① 무작위 추출(재무제표 심사 또는 감리를 받은 후 경과기간 등 고려)
② 회계부정위험 등을 고려한 전산시스템에 의한 분석 등

이에 전산시스템 분석(상기 ②의 방식) 등을 통해 회계부정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지정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 이 외에도, 심사·감리 중 타사의 경미한 위반사항 발견시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현재도 중대한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 실시는 가능)

❷ 재무제표 심사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신설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발견한 특이사항과 관련한 감리집행기관의 자료제출요청(서면)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 회 이상 거부할 경우, 감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는 기업이 불합리한 이유로 협조요청을 거부·회피할 경우, 심사기간이 과도하게 지체되어 "회계오류의 신속수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라는 제도 도입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❸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방식의 적정성을 제고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이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현행 5 단계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8 단계로 보다 세분화. 이는 현 부과 기준을 체계(5 단계)가 다소 단순하여,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가 다름에도 같은 부과 기준율이 적용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

※기본과징금 =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최종과징금은
기본과징금에 가중·감경요소를 반영하여 결정

그 외에도 그간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실무적으로 적용중이던 과징금 산정 및
부과방식*을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수용가능성을 제고

* 다수 회계연도 위반시 과징금 부과방식, 과징금의 증권발행제한조치 대체 요건,
회사의 자진수정공시에 조력한 감사인 과징금 감경, '중과실' 위법행위의 산정방식 등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9.22 일(금)부터 10.4 일(수)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앞서 입법예고('23.8.16~9.25)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24.1 월)에 맞춰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정부는 '23.10.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3.12.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3.10.18(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함.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단위 :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12.31.
		△20%	△30%	△37%	휘발유△25%, 경유·LPG △37%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 개정안은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23.9.5) 및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10.18.~19),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0.24. 예정) 등을 거쳐 '23.11.1.부터 시행할 예정임.

디지털세 필라 1
다자조약문
(Multilateral
Convention)
현재안 공개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 (Multilateral Convention) 현재안 공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Amount A) 관련 논의를 전담하고 있는 작업반(TFDE: Task Force on Digital Economy)은 '23.10.11.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 (Multilateral Convention)과 이에 대한 해석지침(Explanatory Statement)의 현재안을 공개하였음.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필라1 Amount A 다자조약문 현재안 주요내용**

1. 적용대상 그룹 (Covered Group)

- (개요) 다국적그룹이 필라 1 Amount A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 ①매출 200 억 유로(약 30 조원), ②세전 이익률 10% 초과 필요

※ 직전 2년간 대상그룹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연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①직전 4개년 중 2개년 이상, ②최근 5개년 평균으로 세전 이익률 10% 초과 필요

○ 그룹 전체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그룹의 특정 공시부문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공시부문(Segmentation)만 Amount A 적용

- (적용 제외) 그룹 전체 매출 및 이익에서 특정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Amount A 적용 제외

* ①금융업(은행, 보험, 자산운용업 등), ②채굴업(탐사, 개발, 채굴, 자원 소재국 내 가공 등), ③방위산업(군수용 공급품 등), ④국내위주의 사업

2. 과세권 배분 (Allocation and Taxation of Profits)

- (과세소득 배분) 대상그룹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초과이익(세전이익률 10% 초과분)의 25%를 매출귀속기준에 따른 국가별 귀속 매출액 비중에 비례하여 시장소재국에 배분

* 특정국에 배분되는 과세소득
 $[\text{대상그룹의 과세권 배분 과표} - (\text{총매출} \times 10\%)] \times 25\% \times (\text{특정국 귀속 매출} / \text{총매출})$

○ (세이프하버) 대상그룹의 초과이익을 기존 제도에서 이미 과세하고 있는 시장소재국의 경우 필라 1 과세소득 배분 감축

※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시장소재국에서 발생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세이프하버 적용 금액으로 도출하고, 배분되는 과세소득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적용

- (과세연계점) 매출귀속기준에 따라 특정국가에 귀속된 매출이 100 만 유로 이상(약 14 억원)인 경우 해당국은 필라 1 과세권을 배분 받음

※ GDP 400억 유로(약 56조원) 미만 국가는 완화된 기준(매출 25만 유로, 약 3.5억원) 적용

- (매출귀속 기준) 상품·서비스 유형별로 최종적으로 소비된 시장소재국에 매출을 귀속*하기 위한 규칙 적용

* 예시: (완제품) 최종 소비자에 대한 배송지, (서비스) 서비스 이용지 등

3. 이중과세 제거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 (개요) 대상그룹의 필라 1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재배분함에 따라 Amount A 로 과세된 세금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이중과세 조정
 - 비용(감가상각+인건비) 대비 이익이 큰 국가 위주로 이중과세 조정* 부담
 - * ①직접지급(전액 현금지급), ②환급가능 세액공제(세액공제 先적용, 나머지 현금지급), ③세액공제, ④소득공제 中 국가별 입법 방식에 따라 선택 적용

4. 행정과 확실성 (Administration and Certainty)

<행정>

- (신고 및 납부) 지정납부기업(DPE)*이 신고·납세 의무를 부담
 - * 지정납부기업(Designated Payment Entity): 대상그룹의 최종모회사 등
 - (신고기간) 해당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12 개월*
 - * 실제 신고기간은 다자조약(MLC) 당사국(a party)이 결정
- (간소화 규정) 지정납부기업이 거주지 외의 당사국에서 Amount A 과세소득 이외 다른 납세의무 없다면, Amount A 신고서를 대표과세당국*에 제출함으로써 해당국 법인세 신고의무 이행 간주
 - * 대표과세당국(Lead Tax Administration): 지정납부기업의 거주지 과세당국

<확실성>

- (Amount A 조세확실성)* Amount A 적용대상 그룹인지 여부, 신고내용의 적절성 등 다자조약의 모든 측면에 대해 기업이 확실성 요청 가능
 - * Tax Certainty Framework for Amount A
 - (적용 절차) 대표과세당국 또는 리뷰패널(review panel) 검토 → 미합의 시 결정패널(determination panel) 최종 판단
 - ※ (리뷰패널 구성) 대표과세당국 1인, 영향을 받는 당사국 관계자 6인 (결정패널 구성) 독립적 전문가 3인, 당사국 정부 관계자 3인, 전원 합의에 따른 1인(의장)
- (관련쟁점 조세확실성)* Amount A 관련쟁점**과 연계된 과세처분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 * Tax Certainty for Issues Related to Amount A
 - ** 이전가격 조정, 고정사업장 소득배분 등과 관련되고 Amount A에 영향을 주는 쟁점
 - (적용 절차) 대상그룹이 상호합의절차 신청 → 2 년간 상호합의 미해결 시 분쟁해결패널(dispute resolution panel) 검토 요청 가능

5. 당사국이 제정한 특정 조치들의 처리 (Treatment of Specific Measures Enacted by Parties)

- (도입 금지 및 폐지) 다자조약 당사국은 독자적인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지 않으며, 기존 조치(다자조약 부록 A 명시) 폐지
- (처리 방식) 당사국 총회*가 특정 국가가 운영하는 조치에 대해 디지털서비스세**로 결정 시, 해당국에 대한 Amount A 배분 배제

* 다자조약상 규정된 결정을 내리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는 다자조약 당사국 간 회의체

** ① 시장 매출에 대해, ②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을 차별하며, ③ 조세조약에 기반하지 않는 세금

6. 다자조약 관련 규정 (Final Provisions)

- (발효) 필라 1 Amount A 적용대상 기업의 60%를 넘게 보유한 30 개국 이상이 다자조약을 비준한 후 해당국간 논의를 통해 발효일 결정
- (시행) 발효일에서 6 개월 지난 날 이후 가장 빠른 시점의 1 월 1 일부터 필라 1 Amount A 시행
- (매출기준 조정) 발효 7 년 후 필라 1 Amount A 이행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특정 수준 이상의 반대*가 없으면 적용대상 매출기준을 200 억 유로(약 30 조원) → 100 억 유로(약 15 조원)로 인하조정

* ① 당사국 과반수 반대 또는 ② 필라1 적용대상 기업의 60% 이상 보유한 20개국 이상의 반대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규정 적용방법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005, 2023.09.27)

(사실관계)

- 중소기업인 A 법인은 '18 년 청년 및 청년 외 고용증가로 '18 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다가 '20 년에 '18 년 대비 전체 고용은 증가하였으나 청년 고용이 감소

- '21년은 A법인의 전체 고용과 청년 고용 모두 감소

(17년) 청년등 10명, 청년등 외 16명, 전체 26명

(18년) 청년등 28명, 청년등 외 38명, 전체 66명

(19년) 청년등 28명, 청년등 외 41명, 전체 69명

(20년) 청년등 26명, 청년등 외 40명, 전체 66명

(21년) 청년등 19명, 청년등 외 41명, 전체 60명

(질의요지)

- '18 년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유예가 적용되는 '20 년에 전체 고용은 유지하였으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이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 및 사후관리 적용방법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7 제 1 항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 년 12 월 31 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2020 년 12 월 31 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 공제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에 대해 동법 동조 제 1 항 제 2 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하고, 동법 동조 제 5 항에 따라 동법 동조 제 2 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7 제 1 항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 년 12 월 31 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었고 그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2020 년 12 월 31 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동법 시행령 제 26 조의 7 제 5 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동법 제 29 조의 7 제 5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동법 동조 제 2 항 후단에 따라 2020 년 12 월 31 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부하였어야 할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 (Repo 거래)에서 Repo 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은 배당금은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3, 2023.09.26)

(질의요지)

-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해당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대상 주식 (A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A 주식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되 그 배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외국법인 (Repo 매수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

<제2안>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 홍콩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 57 조 제 1 항에 따른 외국 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국제세원-2888, 2023.10.18)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가공·매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년 12월 26일 홍콩 소재의 Amperex Technology Limited (이하 "ATL")사와 특허라이선스 허여 및 소송합의취하 계약을 체결함

- 계약의 주요내용은 질의법인이 ATL의 과거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면책 및 진행중인 특허침해소송 및 무효심판 등을 모두 취하하고, ATL 및 그 계열사에 양도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허여하는 대가로 USD 68M을 지급받기로 함

- ATL사는 해당 소득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홍콩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질의법인에 지급

- 이에, 질의법인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 57 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 여부 질의

(질의요지)

- 홍콩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 57 조 제 1 항에 따른 외국 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다만, 홍콩법인이 질의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 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사전-2023-법규재산-0105, 2023.09.22)

(사실관계)

- 2018.XX.XX. 1 차 상속 개시
 - 신청인을 포함한 상속인이 1차 피상속인상속재산가액(AAA백만원)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함.
- 2022.XX.XX. 2 차 상속 개시(중전 피상속인의 배우자)
 - 신청인이 재상속분(BBB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상속재산가액 CCC백만원을 상속받음.

(질의요지)

- 2020.1.1. 이후 상속 개시된 경우로서 상증법 §30 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 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의 아버지(이하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신청인 포함)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후 신청인의 어머니(이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로서 어머니의 상속 개시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법률 제16846호로 개정(2019.12.31.)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같은 법 제30조제2항 제1호 계산식의 “재상속 분의 재산가액” 산정 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p>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